

대법원 2018도8635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8. 30.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¹⁾위반(사기)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공소사실 중 '피고인이 ①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, ②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, ③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하고, ④ 현기환 전 정무수석,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'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,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도8635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엘시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엘시티PFV와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엘시티의 회장임
- 피고인은 PF대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허위 용역계약에 터 잡아 금원을 편취함 ⇒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
- 피고인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엘시티PFV 등 자금을 횡령함 ⇒ 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
- 피고인은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하여 자금을

1) 이하 '특정경제범죄법'이라고 함

지급받아 편취함 ⇒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

- 피고인은 관계회사인 청안건설 등의 자금을 횡령함 ⇒ 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
- 피고인은 지인 또는 가족에게 아파트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고, 실제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당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 ⇒ 주택법위반
- 피고인은 분양권 매수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함 ⇒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
- 피고인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, 전 국회의원 배덕광, 전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등에게 뇌물을 공여함 ⇒ 뇌물공여, 정치자금법위반

■ 원심의 판단

-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⇒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 - 유죄 :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사기,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
 - 무죄 :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
- 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 ⇒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 - 유죄 : 엘시티PFV와 데코시너지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,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허위급여 명목 청안건설 자금 횡령
 - 무죄 : 그레코스, 꾸메도시와 이공건축사사무소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횡령
- 주택법위반 ⇒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 - 유죄 : 부정한 방법으로 지인 또는 가족에 대한 주택공급
 - 무죄 : 분양권 대량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
-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⇒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
- 유죄 : 현기환, 배덕광, 정기룡, 김태용, 이우봉 관련
- 무죄 : 허남식 관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용역계약의 허위 여부,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
- ▣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일부 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함
- ▣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
- ▣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사건의 판단과 일치하는데, 주된 상고이유가 아님

3. 판결의 의의

- ▣ 용역계약의 허위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